#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입주자모집공고(정정공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4.12.06.)의 내용 중 일부를 2024.12.12.일자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 내용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3)라이프업 키친 옵션(유상) ▶ 주방특화 옵션형(유상) 84B타입 2안 '커튼박스 간접등' 삭제 정정 후(71p) 정정 전(48p) 정정 후(49p) 정정 전(70p) 3) 라이프업 키친 옵션 (유상)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구분 타입 구분 타입 옵션형(유상) 기본현(무상) 옵션템(유상) 편면 · 아잌래드 - 작심장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패메 · 아인레드 및 자시: 수십자 (주) 형탁브레인시티3피에프브이 2. 벽/상판 : 세라믹 타일 2. 벽/상판 : 세라믹 타일 (경유) (주)지당이건설됨 공용주력 결로받지 성능량가 결과 송부[행택 브레인시티 3블럭 공용주택 신축공사(2차평가)] 1. 공동수택명: 펌택 BRAIN CITY 공동3불력 공동주택 3. 싱크수전 : 외산 3. 싱크수전 : 외산 3. 대 지 위 자: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보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3불리 4 투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립라인 + 식탁레임동 + 4. 통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 + 식탁레일등 + 커튼박스 간접등 1, 귀 사의 무궁한 발견을 기원합니다. 가. 소용 관련 등급 5. 주방 TV: 13인지, AI옵성인 1. 벽/상판: 세라믹 타일 주방 TV: 13인치, AI율성인: 1. 벽/상판: 세라믹 타일 2. 싱크수전 : 외산 2 실크슈전 - 인사 2. 귀 사에서 신청한 '명택 브레인시티 3블릭 공동주택 신축공사(2차평가)」는 "공동 3.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 + 커튼박스 3.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 + 커튼박스 주택의 결로 방지를 위한 성계기준" 제5조에 의거한 성능평가를 거친 결과를 아래와 간접등 간전통 신입을 4. 주방 TV : 13인지, AI음성인식 1. 평면 : 아일랜드 + 주방 장식장 + 주방 나 구조 관련 등급 다 생활한 전 전 등급 팬트리(폴딩도어 + 수납장) 팬트리(폴딩도어 + 수납장) 건축물면 출입문 백체결합부 외기에 직접 면하는 항 2. 벽/상판 : 세라믹 타일 2 병/상판 : 세라믹 타일 3. 싱크수전 : 외산 4. 통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 + 식탁레일동 + 다 환경 관련 등급 1. 벽 타임 9256 20 21.01 1 변 타임 4 로마 不명기구 · 준반 슬립라이 » 신란레임드 커튼박스 간접등 커론박스 간접동 5. 주방 TV : 13인지, AI유성인식 면 : 작업대 연장(c 자 주방) + 장식정 5. 주방 TV : 13인지, AI음성인식 MMA 인조대리식 MMA 인조대리적 전타입 전타입 - 레스타 4 월조권 간섭용의 대학의 다당성 2. 싱크수전 : 3. 왕인이 없는 인증서는 호력이 없으며, 우축하단 애크드를 통하여 인증 증명을 확인 1. 평면 : 작업대 연장(= 자 주방) + 장식장 2. 벽/상판 : 세라믹 타일 적수기업체력 교사 적수기업체형 공사 2. 벽/상판 : 세라믹 타일 3. 성크수전 : 외산 3. 기본 조명기구 3. 기본 조명기구 불입 : 공동주택 결료방지 성능 평가보고서 1부, 끝 4 또하 조명기구 · 주반 숙립라이 + 신탈레잌도 + 4.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 + 식탁레일등 커트박스 간접등 대 회대 · 소방 관선 등급 상요함의 5. 주방 TV: 13인지, AI옵성인식 . 주방 TV : 13인치, AI옵성인식 평면 : 아일랜드 + 주방 장식 평면 : 아일랜드 + 주방 장식정 2. 벽/상판 : 세라믹 타일 2. 벽/상판 : 세라믹 타일 수신자 4. 통화 조명기구 : 주방 작업등 + 주방 슬림라인 + 3. 성크수전 : 의산 4.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작업등 + 주방 울림라인 + 식탁레일등 + 커튼박스 간접등 식탁레일등 + 커튼박스 간접등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중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항주택성능원급 인유서를 방급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5. 주방 TV: 13인지, AI옵성인4 아일랜드 + 복도 장식장 + 가-5. 주방 TV : 13인치, AI음성인식 아일랜드 + 복도 장식장 + 가구판별 현조자 2. 별/살판 : 세라면 타잌 2. 벽/상판 : 세라믹 타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시형 녹색건축업용센터-2184 (2024.11.8.) 경수 무 045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1명 (남대문모4가. 대한세울당공화의소) 12명 전화 0088739047 전송 /hjsong&poqa /http://www.kpogs.or.kr 등하 조명기구 · 조바 지어도 및 조바 승리라이 및 4 통하 조메기구 · 즈바 자연드 』 즈바 슬립라이 』 / hijsong@kpogs.or.kr 원통령 작부등 + 커튼박스 간접등 원통형 작부동 - 커튼박스 간접동 5. 주방 TV : 13인치, AI옵성인식 5. 주방 TV : 13인지, AI옵성인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2.06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ark>단지 주요정보</mark> (분양문의 : 1533-0364)

주택유형	해당지	<b> </b> 역	기티	<b>하경기</b>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평택시 1년 이상 (2023.12.06. 이전투				이상 계속 거주자 전부터 계속 거주)	· ·	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반 및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1	택지유형
	10년	3	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택지 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2.06.(금)	2024.12.16.(월)	2024.12.17.(화)	2024.12.18.(수)	2024.12.26.(목)	2024.12.27.(금)~ 2024.12.31.(화)	2025.01.06.(월)~ 2025.01.08.(수)

### 공통 유의사항

1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u>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건경시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생애최초 1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	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l 이상, 지역별·면적별 0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없이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구분없이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 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 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c/2024/braincity)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 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괴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Ο		

※ 다.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06.(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2023.12.06.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4.06.06.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공급신청 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2.16.(월)	2024.12.17.(화)	2024.12.18.(수)	2024.12.26.(목)	2024.12.27.(금)~ 2024.12.31.(화)	2025.01.06.(월)~ 2025.01.08.(수)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	•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	·백동 734-3번지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지역, 비투기과열지구인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예정시기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51235호(2024.12.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3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1,9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967세대(기관추천 151세대, 다자녀가구 198세대, 신혼부부 272세대, 노부모부양 59세대, 생애최초 287세대) 포함]

■ 입주시기: 2028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3

(단위 : m², 세대)

<b>T</b> EII		구민식		7	F택공급면적	1	기타	711.01	III EII EH	* 7.7			특별공급	세대수			OLHLIZZ	최하층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59.9866A	59A	59.9866	21.8042	81.7908	44.3093	126.1001	34.4338	97	10	10	17	3	18	58	39	3
	02	059.9933B	59B	59.9933	22.0127	82.0060	44.3141	126.3201	34.4377	97	10	10	17	3	18	58	39	3
	03	084.9738A	84A	84.9738	28.6260	113.5998	62.7664	176.3662	48.7771	1,089	108	108	196	32	207	651	438	39
2024000695	04	084.9952B	84B	84.9952	28.7875	113.7827	62.7822	176.5649	48.7894	233	23	23	42	7	44	139	94	8
	05	119.9817A	119A	119.9817	39.6804	159.6621	88.6253	248.2874	68.8725	372	-	37	-	11	-	48	324	11
	06	119.9818B	119B	119.9818	38.0611	158.0429	88.6253	246.6682	68.8726	102	-	10	-	3	-	13	89	3
					합 계					1,990	151	198	272	59	287	967	1,023	67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9866A	059.9933B	084.9738A	084.9952B	119.9817A	119.9818B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119A	119B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	59A	59B	84A	84B	119A	119B	합 계
	=	국가유공자		2	22	5	-	-	31
	장기	2	2	16	3	-	-	23	
	10년 0	상 장기복무군인	2	2	16	3	-	-	23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의	1	1	22	5	-	-	29	
기친구선 국결하出		경기도	1	1	19	4	-	-	25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7	2	-	-	11
		인천광역시	1	1	6	1	-	-	9
		10	10	108	23	0	0	15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평택시 및 계속	5	5	54	12	19	5	100	
디자녀기구 국글증법		멸시, 인천광역시, 릴 미만 및 전국 (50%)	5	5	54	11	18	5	98
	17	17	196	42	-	-	272		
	3	3	32	7	11	3	59		
	생애최초 특별공급				207	44	-	-	287
	합 계			58	651	139	48	13	967

<sup>※</sup>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77		-11 FL		분양	가격		계약금	1(10%)			중도금	(60%)			잔금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층	해당 세대 수	FUTLU	71 + 111	부가	7.11	계약	계약 흐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0%)
	<b>全</b>		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계약 체결시	계약 후 1개월 내	2025.04.10	2025.10.10	2026.04.10	2027.02.10	2027.05.10	2027.09.10	입주 지정일
		2층	3	137,262,114	225,737,886	-	363,000,000	10,000,000	2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108,900,000
		3층	3	137,262,114	233,737,886	-	371,000,000	10,000,000	2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111,300,000
59A	97	4층	3	137,262,114	242,737,886	-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5층	3	137,262,114	249,737,886	-	387,000,000	10,000,000	2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16,100,000
		기준층	85	137,262,114	260,737,886	-	398,000,000	10,000,000	2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2층	3	137,277,445	218,722,555	-	356,000,000	10,000,000	2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106,800,000
		3층	3	137,277,445	226,722,555	-	364,000,000	10,000,000	2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59B	97	4층	3	137,277,445	234,722,555	-	372,000,000	10,000,000	2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5층	3	137,277,445	242,722,555	-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기준층	85	137,277,445	253,722,555	-	391,000,000	10,000,000	2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1층	12	194,438,149	290,561,851	-	485,000,000	10,000,000	3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2층	39	194,438,149	300,561,851	-	495,000,000	10,000,000	3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48,500,000
84A	1.089	3층	39	194,438,149	311,561,851	-	506,000,000	10,000,000	4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51,800,000
04A	1,069	4층	39	194,438,149	322,561,851	-	517,000,000	10,000,000	4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5층	39	194,438,149	333,561,851	-	528,000,000	10,000,000	4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기준층	921	194,438,149	349,561,851	-	544,000,000	10,000,000	4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63,200,000
		2층	8	194,487,117	301,512,883	-	496,000,000	10,000,000	3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48,800,000
		3층	8	194,487,117	311,512,883	-	506,000,000	10,000,000	4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51,800,000
84B	233	4층	8	194,487,117	322,512,883	-	517,000,000	10,000,000	4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5층	8	194,487,117	333,512,883	-	528,000,000	10,000,000	4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기준층	201	194,487,117	349,512,883	-	544,000,000	10,000,000	4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63,200,000
		2층	11	274,543,679	397,687,564	39,768,757	712,000,000	10,000,000	6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213,600,000
		3층	11	274,543,679	413,142,110	41,314,211	729,000,000	10,000,000	6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218,700,000
119A	372	4층	11	274,543,679	426,778,473	42,677,848	744,000,000	10,000,000	6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223,200,000
		5층	11	274,543,679	441,323,928	44,132,393	760,000,000	10,000,000	6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228,000,000
		기준층	328	274,543,679	461,323,928	46,132,393	782,000,000	10,000,000	68,20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234,600,000
		2층	3	274,543,908	379,505,538	37,950,554	692,000,000	10,000,000	5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207,600,000
		3층	3	274,543,908	393,141,901	39,314,191	707,000,000	10,000,000	6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212,100,000
119B	102	4층	3	274,543,908	406,778,265	40,677,827	722,000,000	10,000,000	6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216,600,000
		5층	3	274,543,908	422,232,810	42,223,282	739,000,000	10,000,000	6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221,700,000
		기준층	90	274,543,908	441,323,720	44,132,372	760,000,000	10,000,000	6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228,000,000
-	•		•				1									

## 4 특별공급

구분	내용								
T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 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발표	: - 포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	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인	조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b>무효</b> 처리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두 <b>부적격</b>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	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공통 유의사항"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수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대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51세대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19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면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구분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1-1-1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경기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031-259-1783) 						
추천기관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31-201-6942)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4),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961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당첨자 선정방법	<ul>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우선공급 물량의 낙첨자가 기타지역 물량에서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은 미적용됨.

■ ①지역: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함), 나머지 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 ②배점

당첨자 선정방법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11 -10 -1	0-11-0	기준	점수	-1±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세대구성(3)	_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네구경(3)	5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		
· 11 · 1 ⊑ (3)		1년 이상 ~ 5년 미만	5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구분			내용			
대상자	- 신혼부부는 혼인선 ※ 단, 혼인기간 중 입주자모집공고역 ■ <b>혼인기간이 7년</b> ( ■ 「신혼부부 주택 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서울틀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b>l</b>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당첨자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선정방법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					
	급하고,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	가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	.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기타지역(전국)에 거주			
	한 자 50% 순	으로 공급				

####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특금액						
		미끌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W 001 014F 7F7	ᄉᄃᄁᄌᆞᇬᄓᄀᆝᄀᄀ	기人벼 기그다 의൹-	그사트 . 여이다 교	<b>コ</b> ス 巨 /700 211\ v	(NI O)) * N	VI . 이어 이사 7L <sup>-</sup>	ᄀ이ᄉ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 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 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신국출]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금액 단, * 「농지법 * 「초지법 하가증의 * 공부상 * 종중소의 제한을	아래 경우는 제외 기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가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기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 리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 무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용되고 있는 경우 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대상자  ■ 최소 입주자요심공고입 현재 병부시, 및 선국(서울특별시, 인전상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제대주  □ 파악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구분	내용								
### ### ### ### ### ### ### ### ###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	· - - - - - - - - - - - - - - - - - - -					
■ 안당하게 이상의 식계존속때부사의 삭제은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며 부장 2년 세대를 수단하목표보증단에 하세되어 있는 경우에 연안한 분   조작목을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발면적별 예지급액 이상)  ■ 당첨자 신청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동장 가입기간 → ③추첨  ■ ②지역 : 강청이 있을 경우 모집공교일 기준 평벽시에 나한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미안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전국(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가주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신공급  ■ ②가점 : 「주택금리에 관한 규칙, 별표기(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절 보고로 함복시 경기도 연명될 경우 부적과 당첨 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청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기일 나학)  - 가점 산성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기일 나학)  - 가점 산성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기일 나학)  - 가점 산성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기일 나학)  - 기점 등 보기 등	ell 4 kml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	무주택자이어야 함							
■ 우적하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참석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영점차 전청 전성 보급, (2)지역 - 《경착동상 기업 기간 · 《순축점 ■ 《3기업 :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교및 기준 병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전국(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신공급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의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일 나목)  가집항목 가집상한 기관 전략 경우 연구 기원 기관 전략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질문으로 만성하고를 보면 기원 이상 - 1만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만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만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만 미만 2 1년 이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년 미만 2 1년 1년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 1년 미만 1 1년 1	내장사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	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b>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b> (같은 세년	대별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b>한 분</b>	<u>!</u>			
● ②지역 :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병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만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전국(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발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기한 참 정작가점 점수로 천청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질 옷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점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척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발표1의2 나목)  가정호복 가정상한 가정구분 정수 가접구분 정수 의원 이번 이원 18 인수 9년 미만 18 인수 9년 미만 18 인수 9년 미만 18 인수 19년 미만 2 9년 이상 9년 미만 18 인수 19년 미안 2 9년 이상 11년 미만 20 인수 11년 미만 20 1년 미안 12 1년 미안 11년 미만 20 1년 미안 12 1년 미안 11년 미만 20 1년 미안 10 13년 이상 -11년 미만 20 1년 미산 -11년 미안 10 13년 이상 -11년 미만 20 1년 미산 -11년 미안 10 13년 이상 -11년 미만 20 1년 미안 10 15년 미안 30 1년 미안 10 15년 미산 -12년 미만 30 1년 미안 10 15년 미산 -12년 미안 30 1년 미안 10 15년 미안 30 30 1년 미안 10 5명 10년 이상 -11년 미만 10 10 10년 미안 11 10년 이상 -11년 미만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 10년 이상 -1년 미만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1 10 이상 -12년 미만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2 10년 이상 -11년 미만 13 10년 이상 -11년 미만 15 10년 이상 -12년 미만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12 10년 이상 -12년 미만 13 10년 이상 -12년 미만 15 10년 이상 -12년 미만 16 10년 이상 -12년 미만 16 10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되」제28조제1항의 <b>1순</b>	<b>위에 해당하는 분</b> - 청약통장 가입기간 1	2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②지역 :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용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산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전국(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료1(가점계 책용기준에 의가한 청약가점 점수가 보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질 옷으로 판병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척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료1의2 나목)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②가점: '주락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착용기준)에 의가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점자를 신청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질문으로 만큼할 경우 부격적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으는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92 나목)  가정함목 가집상한 가정구를 경우 변수 기원 1명 18 1명				_	· - - - - - - - - - - - - - - - - - - -	l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전	선국(서울특별시, 인천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기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정악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절						,				
용상 부 전						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 2 ** ** ** ** ** ** ** ** ** ** ** ** *										
## 15년 이상 - 9년 미만 18										
## PRAN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3년 미만 24 3년 이상 ~ 3년 미만 10 13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안 ~ 5년 이만 10 13년 이상 ~ 13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0 13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7년 이상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7년 이상 8년 미만 16 18 19 10 5명 30 30 8년 이안 5 4명 25 25 1명 10 5명 30 30 8년 이안 35 38 20 1명 10 5명 30 35 38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만30세 미만 미혼자						
당첨자 선정방법  10 무주택기간  10 12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2년 미만 26 12년 미만 26 12년 미만 26 13년 이상 ~ 14년 미만 26 12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12년 미안 30 12년 이상 ~ 15년 미만 30 12년 이상 ~ 12년 미만 16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12년 이상 ~ 12년 미만 16 12 12년 이상 ~ 12년 미만 16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 10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 10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 10 12년 이상 ~ 12년 미만 1 1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 11년 미만 11 11년 이상 ~ 12년 미만 11 11년 미만 11 11년 이상 ~ 12년 미만 11 11년 미만 12 12년 이상 ~ 12년 미만 1 10 이상 ~ 11년 미만 12 12년 이상 ~ 12년 미만 1 10 이상 ~ 12년 미만 13 11년 미만 14 11년 이상 ~ 13년 미만 14 11년 이상 ~ 13년 미만 14 11년 이상 ~ 13년 미만 15 12년 이상 ~ 12년 미만 15 12년 이상 ~ 12년 미만 15 12년 이상 ~ 12년 미만 1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5 12년 이상 ~ 12년 미만 15 12년 이상 ~ 12년 미만 1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5 12년 이상 ~ 12년 미만 1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5 12년 이상 ~ 12년 미만 15 12년 이상 ~ 12년 미만 16 12년 이상 ~ 12년 미만 17 14년 이상 ~ 13년 미만 16 12년 이상 ~ 12년 미만 15 12년 이상 ~ 12년 미만					2					
당첨자 선정방법	ĺ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당첨자 선정방법  2 부양가족수 35 18 19 10 13년 이상 ~ 14년 미안 32 14년 이상 ~ 15년 미안 32 15 0명 5 4명 25 18 19 10 5명 30 28 29 15 6명 이상 35 28 20 ——————————————————————————————————		①무주택기간			-					
당첨자 선정방법  2부양가족수 35	1		32							
당첨자 선정방법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설정방법         2 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미만         11         11년 미만         1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1년 미안         12         12년 미안         12         12년 미안         13         10년 이상 ~ 10년 미만         12         12년 미안         13         10년 이상 ~ 10년 미만         13         10년 이상 ~ 10년 미만         13         10년 이상 ~ 10년 미만         13         12년 이상 ~ 10년 미만         14         4년 미안         15         6년 미안         14         11년 미안         15         6년 미안         15         6년 미안         16         12년 이상 ~ 12년 미안         15         16         10										
변점자 선정방법										
선정방법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5 12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5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 5년 이상 ~ 8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5년 미만 16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10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10주자저축 10주로 한 전환가절한 날을 기준으로 함 15은로 참 15년 이상 전환가절한 날을 기준으로 함 15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천자					15년 이상	32			
2 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0 35 35 35 35 36 2명 15 6명 이상 35 36 38 20 50 5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미만 1 1 1년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14년 미만 15 12년 이상 ~ 14년 미만 15 12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 15년 미만 17 전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8년 미만 9 10 5년 이상 ~ 15년 미만 17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18 15년 이상 15년 미만 17 18년 이상 ~ 15년 미만 16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10 5년 이상 17 17 18년 이상 ~ 15년 미만 17 18년 이상 ~ 15년 미만 18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 15년 미만 19 18년 이상 ~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 15년 미만 19 18년 이상 ~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 15년 미만 19 18년 이상 ~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 15년 미만 19 18년 이상 ~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 15년 미만 15 18년 이상 15년 미만 16 18년 이상 ~ 15년						4 P.	25			
2명 15 6명 이상 35  18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  3년 이상 ~ 6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 15년 미만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17  ※ 보인 청약가점 점수 = ③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10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구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선성망법		35	· <del>-</del>	-					
3명   20   10   10   10   10   10   10   10		②부양가족수								
## 16 ## 10 ## 1						6등 이상	35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12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12   12   12   12   12   12   1						이를 이사 이를 때마	10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14년 이상 ~ 13년 미만   1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5   15년 이상 ~ 15년 미만   16   15년 이상 ~ 15년 미만   16   15년 이상 ~ 15년 미만   16   15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15   15년 이상   15년 이상   17   15년 이상   15년 이상   17   15년 이상   17   15년 이상   15년 이상   17   15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7   15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7   15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7   15년 이상   15년 이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5 1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6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 15년 이상 ~ 8년 미만 9 15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17 18년 이상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7년 이상 ~ 8년 미만 19 18년 이상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15년 이상 17 18년 이상 15년 이상 16년 이상 16년 이상 15년 이상 16년 이상 15년 이상 16년 이상 15년 이상 16년 이상 16년 이상 15년 이상 16년 이상 1	1		-							
##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1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6 15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5년 미만 17 15년 이상 17 15년 이상 ~ 8년 미만 9 17 17년 이상 ~ 8년 미만 9 17 17년 이상 ~ 8년 미만 9 17 17년 이상 ~ 8년 미만 9 18 15년 이상 17 17 17년 이상 ~ 8년 미만 9 18 15년 이상 17 17 17년 이상 ~ 8년 미만 19 18 17 17 17년 이상 ~ 8년 미만 19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7		•					
5년 이상 ~ 6년 미만	1	가입기간	''		-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보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보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보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8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9	.02 10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2 + 3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족			수를 합산하지 않음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 다 처야저추에서	조하저추ㅇㄹ 저화하 겨오 저하게설6	하 난은 기주이리 하			
					, , , , , , , , , , , , , , , , , , , ,	· ㅇㅂ시국으로 교관한 경구 인원개별원	그 ㄹㄹ 기군으도 엄			
<b>비고   -</b>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	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	1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	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죄조 특멸공급	(「주'
구분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 ■ 생애최초로 주택을 - 모든 세대구성원이 ※ (예외) 2024.03.25 ■ 「주택공급에 관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아래 '가' 또는 '나 - 가. 혼인 중이거나 - 나. 1인 가구(혼인 * 1인 가구는 추첨; * '단독세대'란, 단독60㎡ 이하 주택형 * '단독세대가 아닌 ■ 「생애최초 주택 특 ■ 입주자모집공고일 * 과거 1년 내에 : * 소득세 납부의무	<b>을 구역</b>   과기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단계	: ①
	<u> </u>	
	2단계	
당첨자 선정방법	25131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	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b>무주택세대구성원</b>						
	■ 생애최초로 주택을	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C	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	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	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b>1순위</b>	l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긴	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니	<b>ト</b> '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니	· 마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년	모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	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	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	네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 <sup>!</sup>	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형	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 ·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	네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히	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b>									
	* 과거 1년 내에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덕	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u> </u>						
	│ ■ ①Δ + 2 ③ 2 · │ ■ ①소득구분								
		A = 7 H	1110						
	단계	소득구분 신생아 우선공급	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단계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브	3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_		(35%) 일반공급							
	4단계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5단계	추첨공급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지	└ ├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ヨ	기 보고 보고 기구 5년 기구 5년 3,100년년 이야인 문 대한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 : • = " • "							

■ ②지역: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전국(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포 <b>국</b> 구군	미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으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전용면적 135㎡ 이하 모든면적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당·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 [청약 평택시 및 경기도, 전국 기타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명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여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입한 분	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분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 ③추첨 일 기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혀 거주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한 자	,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전국(서울특별시, 인천 <b>추첨제</b> 60% 60% 10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	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본인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기합기선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베구시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 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에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b>■ ③무주택자 우선공급</b>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	입주자를 선	따라	단계에	다음	경우	있는	경쟁이	추첨제에서	: 1순위	우선공급 :	▮③무주택자	
--	--------	----	-----	----	----	----	-----	-------	-------	--------	--------	--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④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6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추가서류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2024.12.26.(목) ~ 2025.01.04(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청약홈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2024.12.2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2024.12.27.(금) ~ 2024.12.31.(화) 10:00 ~ 17:00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4-3)

#### ■ 공통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구분	서. 필수	류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포함)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 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0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차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0		다자녀 특공 배점표		• 견본주택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 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다자녀 가구		0	한부모가족증명 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가구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보이	<ul>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 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이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변화)							
	0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H 01 F1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 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 배우자	<ul>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신혼부부 <sup>*</sup> 특별공급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11 1 1 1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 만19세이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사실증명(신고 사실없음)	상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0	부동산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시가격 열람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0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보이 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ul>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 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사실증명(신고 사실없음)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0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노부모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양자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TI H OF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li>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일반공급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당첨자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서	류유형		발급기준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비 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성명 전부 표기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비 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 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부적격 통보		0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자		0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외 모두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 자 (본인)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0	위임장	공급신청 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양식 : 견본주택 비치)
제3자)		0	대리인 신분증, 도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3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23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23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근 로 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하 동일) ※ 전년도(23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23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23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자 영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와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업 자	법인 대표자	① 전년도(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23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23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3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нI	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자산 입증 서류 목록	*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및재산세 납부내역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함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 및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제출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5개 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세무서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특별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4]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해외 근무자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단신부임)		0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청약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해당 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71.00-000	TENT THE TO THE ROLL TO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게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나라는 페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하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명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역사 임차으로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8

대상	계약체결 기간	장소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2025.01.06.(월) ~ 2025.01.08.(수) 10:00 ~ 16:00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예정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4-3)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필수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해당자)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 계약시 (대리인도 본인계약 서류 일체 포함)	○ 추가 개별통지서류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0	입금증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견본주택에서는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0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0		인감증명서 또는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0	이가ㄷ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THIS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0		전자수입인지(사본)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수입인지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or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
제3자 대리인 - 신청시 -	0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0	위임장	- 위임장(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0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당첨자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0	인감도장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 증서 : 계약서 1통마다 납부)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도급증서'(계약서 1통마다 납부)로서 과세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시 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1.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대상 증서	2.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도급 증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	2023.01.01. 시행된「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우리은행	1005-104-719734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계약 체결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FF금융지사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 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합니다.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이를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 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①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 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합니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합니다.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 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 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 적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므로, 계약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명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 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주소 또는 연락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상 각종 통지를 종전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발송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서면으로 통지한 계약상 각종 통지가 반송된 경우 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송시점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수납 지연 등은 계약자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대금 과/오납시 환불에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이 때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 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한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함.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평택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간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 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 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 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 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 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 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 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 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자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입주예정일 : 2028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의거,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독서실, 그리너리카페,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등
- 단지 내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단,「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의 ④항의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즈 FII 취	바그나 하자 그에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주 택 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d T
59A	6,470,000	647,000	5,823,000	
59B	5,200,000	520,000	4,680,000	
84A	8,300,000	830,000	7,470,000	
84B	6,280,000	628,000	5,652,000	
119A	8,630,000	863,000	7,767,000	
119B	7,340,000	734,000	6,606,000	

###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7-	<b>계</b> 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계약시 납부)	잔금(입주지정일 납부)	
발코니확장	계약금	국민은행	816937-04-018677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발코니확장 공사비의 10%	발코니확장 공사비의	
공사비	잔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계약체결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글포덕국 6 6시테크 10/0	90%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1533-03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상기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합니다. 또한 잔금 선납시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계약금은 상기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공급가와 별도입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도급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따라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 계약이므로 각각 납부하여야합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시설·방화구조 등)을 준수 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 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계약으로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 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은 입주자의 책임이며, 직접 외기 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 또는 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 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 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특화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자식스위치, 세대/통신단자함, 온도조절기 등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 하드웨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및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 돌출, 실사용면적의 감소, 천장 크기의 감소, 조명의 상태와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 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주방가구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추가선택 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 선택 옵션 (유상 선택 옵션)

-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벽/바닥 마감재, 주방 스타일링 특화, 평면옵션 및 수납특화옵션, 가전류 등)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 또는 타 제조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도급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따라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 계약이므로 각각 납부하여야합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디자인이 적용되며, 옵션의 형태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내 기본형(무상) 내용은 발코니 확장 기준 안내입니다.

# 1)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 (유상)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고
十七	니ㅂ		기급하(구경)	□¬0(π0)			о Ä	계약시	입주지정일	J 7:
	현관 및 40 BL41			59A	2,270,000	227,000	2,043,000			
				59B	2,270,000	227,000	2,043,000			
현관		미설치	2안	원슬라이딩 자동중문 +	84A	2,270,000	227,000	2,043,000	_	
중문	니 입	1안	미글시	시트판넬	시트판넬	84B	2,270,000	227,000	2,043,000	
						119A	2,380,000	238,000	2,142,000	
l				119B	2,270,000	227,000	2,043,000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으며, 시트판 벽지로 시공됩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가구 마감판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고
一下正	4 8	71亡8(十6)		답건성(ㅠᆼ)		о ¬ï	계약시	입주지정일	이 1
		1. 벽 : 실크벽지		1. 벽 : 복도 시트판넬	505			0.504.000	
		1안 2. 바닥 : 전 실 강마루 (섬유판)	2안	2. 천장 : 복도 간접등 3. 바닥 : 전 실 광폭 강마루 (섬유판)	59B	2,890,000	289,000	2,601,000	
▮ 바닥 │	전 타	1. 벽 : 실크벽지 1안 2. 바닥 : 전 실 강마루 (설요판)	2안	1. 벽 : 복도,쇼파뒷벽 시트판넬 2. 천장 : 복도 간접등 3. 바닥 : 전 실 광폭 강마루 (섬유판)	119B	4,180,000	418,000	3,762,000	
마감재 특화	입	입 1. 벽 : 실크벽지		59A	3,390,000	339,000	3,051,000		
' '			2안	1. 벽 : 복도,쇼파뒷벽 시트판넬 2. 천장 : 복도,쇼파뒷벽 간접등	84A	3,920,000	392,000	3,528,000	
		강마루 (섬유판)	2 1	- 2. 년	84B	3,850,000	385,000	3,465,000	
					119A	5,430,000	543,000	4,887,000	

- 벽 마감재 옵션은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본공사 시 강마루 제조사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및 소파뒷벽의 시트판넬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옵션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복도 시트판넬 구간에 면한 목창호 문선 및 상부 란마의 형태 및 규격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복도 및 소파뒷벽에 설치되는 간접조명의 규격 및 상세, 형태는 본공사시 접합부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_\_\_\_\_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고
	59A,B	1안	기본 조명 +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2안	특화조명기구 : 거실라인간접등 + 침실(침실1,2,3) 엣지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거실,주방,침실1,2,3)	1,660,000	166,000	1,494,000	
	84A	1안	기본 조명 +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2-1안	특화조명기구 : 거실라인간접등 + 침실(침실1,2,3),알파룸 엣지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	1,920,000	192,000	1,728,000	주방특화 미선택시
			+ 그미드 그귀시 글인영	2-2안	특화조명기구 : 거실라인간접등 + 침실(침실1,2,3) 엣지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거실,주방,침실1,2,3)	1,710,000	171,000	1,539,000	주방특화 선택시
	84B	1안	기본 조명 +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2안	특화조명기구 : 거실라인간접등 + 침실(침실1,2,3) 엣지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거실,주방,침실1,2,3)	1,710,000	171,000	1,539,000	
조명 특화	119A	1안	기본 조명 +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2-1안	특화조명기구 : 거실라인간접등 + 침실(침실1,2,3),알파룸 엣지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	2,280,000	228,000	2,052,000	드레스룸 특화 미선택시
				2-2안	특화조명기구 : 거실라인간접등 + 침실(침실1,2,3) 엣지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거실,주방,침실1,2,3)	2,070,000	207,000	1,863,000	드레스룸 특화 선택시
	1100	101	기본 조명	2-1안	특화조명기구 : 거실라인간접등 + 침실(침실1,2,3),알파룸 엣지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	3,220,000	322,000	2,898,000	비스포크 스튜디오 미선택시
	119B	1안	+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2-2안	특화조명기구 : 거실라인간접등 + 침실(침실1,2,3) 엣지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	3,070,000	307,000	2,763,000	비스포크 스튜디오 선택시

- 조명특화옵션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형태변경에 따른 조도가 상이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 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거실,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조명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옵션에 따라 조명기구 및 스마트스위치의 특화 범위가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에만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되며, 기본형(1안) 선택 시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 및 옵션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타입 주방 스위치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119B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 선택시에는 스마트스위치에서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습니다.
- 84A 주방특화 옵션 선택시, 알파룸의 스마트스위치는 일반 텀블러스위치로 변경됩니다.

## 2) 라이프업 수납 옵션 (유상)

2) 라이프	다이프업 수납 옵션 (유상) (단위: 원, VAT포함) (단위: 원, VAT포함) (단위: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일	비고
	59	1안	1.현관입구 : 벽지 2. 기본 신발장	2안	1. 현관입구 : 시트판넬 2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선반 (조명포함) +	59A	1,570,000	157,000	1,413,000	
	3. 연판상고 :	3. 현관창고 : 가구도어(여닫이도어)	20	신발장 하부조명 3. 현관창고 특화 : 폴딩도어 + 시스템선반 특화	59B	1,570,000	157,000	1,413,000		
			1.현관입구 : 벽지 2. 기본 신발장 3. 현관창고 :		1. 현관입구 : 시트판넬 2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선반 (조명포함) + 신발장 하부조명	84A	3,070,000	307,000	2,763,000	
현관 수납 특화	수납 특화			2안	3. 현관창고 특화 : 폴딩도어 + 시스템선반 4. 팬트리 특화 : 폴딩도어 + 시스템선반 + 가구판넬 연장	84B	3,140,000	314,000	2,826,000	
		1안	가구도어(여닫이도어) 4. 복도팬트리 : 가구도어(여닫이도어)		1. 현관입구 : 시트판넬 2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선반 (조명포함) + 신발장 하부조명	119A	2,980,000	298,000	2,682,000	
1	119			2안	3. 현관창고 특화 : 폴딩도어 + 시스템선반 4. 팬트리 특화 : 폴딩도어 + 시스템선반	119B	2,890,000	289,000	2,601,000	

(다이 . 이 사사표하

- 현관 수납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현관입구는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현관 수납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복도 가구판넬 연장 유무는 타입에 따라 상이합니다.
- 현관 수납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현관창고 및 복도 팬트리 내 설치되는 폴대형 시스템선반은 유상옵션 품목으로 기본 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신발살균기 및 디자인선반(조명) 설치에 따라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관/복도 수납특화 옵션형(2안) 미선택 시 신발살균기 및 디자인선반(조명) 전원 및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구분	타입	기	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일	비고
						59A	4,090,000	409,000	3,681,000	
	50.04	401		201	드레스룸 통합 - 포켓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 (조명포함) + 천장형 제습기	59B	4,200,000	420,000	3,780,000	
	59,84	1안	미제공	2안		84A	5,300,000	530,000	4,770,000	
드레스룸 특화						84B	6,070,000	607,000	5,463,000	
	119	1안	미제공	2안	- 파우더장 + 붙박이장 +시트판넬 +AL 슬라이딩도어 + 아일랜드 서랍장 + 디자인 시스템선반 (조명포함) + 천장형제습기 + 드레스룸 조명특화 - 주방팬트리 (폴딩도어 + 수납장 + 센서등)	119A	13,050,000	1,305,000	11,745,000	
				2안	AL 슬라이딩도어 + 시트판넬 + 전신거울 + 붙박이장 + + 아일랜드 서랍장 + 천장형 제습기 + 드레스룸 조명특화	119B	7,390,000	739,000	6,651,000	

- 드레스룸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코스텔, CDD-600B)가 포함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포켓도어 또는 AL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은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선택시 별도의 제습기용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고	
			,				·	계약시	입주지정일	•	
침실3	59	1안	미설치	2안	침실3 붙박이장	59A	980,000	98,000	882,000		
붙박이장	39	16	미글시	20	2인	(폴딩도어)	59B	1,060,000	106,000	954,000	
						84A	2,930,000	293,000	2,637,000		
침실2,3 매리형	84,	1 O ŀ	미서비	201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84B	2,930,000	293,000	2,637,000		
붙박이장	배탑영   110   1안   비실시   2안	(폴딩도어)	119A	3,800,000	380,000	3,420,000					
			119B	3,800,000	380,000	3,420,000					

- 침실 붙박이장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도배 및 강마루가 설치됩니다.
-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의 가로폭 사이즈가 줄어들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형태 및 규격은 타입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옵션 옵션형(2안) 선택시 침실2,3에 붙박이장이 설치되며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3) 라이프업 키친 옵션 (유상)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일	비고
			1. 평면 : 아일랜드 + 장식장 2. 벽/상판 : 세라믹 타일 3. 싱크수전 : 외산 4.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 + 식탁레일등 + 커튼박스 간접등 5. 주방 TV : 13인치, AI음성인식	59A 7,060,000	706,000	6,354,000	
주방 특화	전타입	1. 벽 : 타일 (300*600), 상판 : MMA 인조대리석 2. 싱크수전 : 절수기일체형 국신	1. 벽/상판 : 세라믹 타일 2. 싱크수전 : 외산 2안 3.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 + 커튼박스 간접등 4. 주방 TV : 13인치, AI음성인식	59B 3,680,000	368,000	3,312,000	
		3. 기본 조명기구	1. 평면 : 아일랜드 + 주방 장식장 + 주방 팬트리(폴딩도어 + 수납장) 2. 벽/상판 : 세라믹 타일 3. 싱크수전 : 외산 4.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 + 식탁레일등 + 커튼박스 간접등 5. 주방 TV : 13인치, AI음성인식	84A 12,720,000	1,272,000	11,448,000	

2안	1. 평면 : 작업대 연장(ㄷ 자 주방) + 장식장 2. 벽/상판 : 세라믹 타일 3. 싱크수전 : 외산 4.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 + 식탁레일등 5. 주방 TV : 13인치, AI음성인식	84B	8,570,000	857,000	7,713,000	
2안	1. 평면 : 아일랜드 + 주방 장식장 2. 벽/상판 : 세라믹 타일 3. 싱크수전 : 외산 4.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작업등 + 주방 슬림라인 + 식탁레일등 + 커튼박스 간접등 5. 주방 TV : 13인치, AI음성인식	119A	14,550,000	1,455,000	13,095,000	
2안	1. 평면: 아일랜드 + 복도 장식장 + 가구판넬 연장 2. 벽/상판: 세라믹 타일 3. 싱크수전: 외산 4. 특화 조명기구: 주방 작업등 + 주방 슬림라인 + 원통형 직부등 + 커튼박스 간접등 5. 주방 TV: 13인치, Al음성인식	119B	12,070,000	1,207,000	10,863,000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라믹 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팝업 콘센트의 설치 유무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어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으며, 선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별도의 센서식 싱크절수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특화조명기구의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일반형/고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2안) 선택시 59A, 84A, 84B, 119A의 식탁 조명은 레일 조명이 설치되며, 119B는 원통형직부등이 설치됩니다. 또한 59B의 경우 별도의 식탁등에 대한 특화조명 은 없습니다.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고		
- 1 -	7.0		7128(18)		BES(110)			계약시	입주지정일	-1 -		
						59A	5,430,000	543,000	4,887,000			
	59,84	1안	냉장고/김치냉장고	2안	3컬럼 패키지 냉장고	59B	5,260,000	526,000	4,734,000			
	33,04	' -	상부장	20	+ 상부장 + 키큰장	84A	5,270,000	527,000	4,743,000			
						84B	5,270,000	527,000	4,743,000			
주방				2-1안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키큰장	119A	5,130,000	513,000	4,617,000	냉장고 패널 색상		
생장고 장	냉장고 119A 장 2		냉장고/김치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2-2안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히든홈바 (포켓히든도어 + 장식장 + 세라믹 상판)	119A	10,300,000	1,030,000	9,270,000	59A,B - 새틴화이트 84A,B - 새틴화이트 119A - 새틴화이트		
		101					2-1안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키큰장	119B	5,130,000	513,000	4,617,000
	119B			2-2안	3컬럼 패키지 냉장고 + 상부장 + 키큰장 + 히든홈바 (포켓 히든도어 + 장식장 + 세라믹 상판)	119B	10,300,000	1,030,000	9,270,000			
국탑	전타입	1안	3구 가스쿡탑 하츠	2안	전기쿡탑(인덕션 3구) 쿠첸 CEN-IF3A0NBA		650,000	65,000	585,000			
1 T II	선되급	12	SSGC-3605SABH	3안	전기쿡탑(인덕션 3구) 헬러 DI-3030W		2,490,000	249,000	2,241,000			
				2안	삼성전자 DW60BB800UAP		1,100,000	110,000	990,000	식기세척기패널 색상		
식기 세척기 <sup>전</sup>	전타입	1안	미설치	3안	삼성전자 DW60BB837UAP		1,400,000	140,000	1,260,000	59A,B - 새틴화이트 84A,B - 새틴화이트 119A - 새틴화이트 119B - 새틴베이지		
전기	권디이	4.01	DI M +1	2안	삼성전자 NQ36A6555CK		450,000	45,000	405,000			
오븐	전타입	1안	미설치	3안	삼성전자 NQ50T8539BK		850,000	85,000	765,000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RZ34C7865AP), 냉장고(RR40C7995AP), 김치냉장고(RQ34C79(8)45AP)로 구성되며, 각 냉장고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의 전면 패널 마감재는 상기와 같은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는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쿡탑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 (하츠, SSGC-3605SABH)이 설치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형(인덕션 3구) 선택시에는 가스배관이 주방까지 동일하게 설치되며,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원형 타공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시 전면 마감재는 상기와 같은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주방 냉장고장은 타입별로 크기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 및 세대분전반의 차단기가 별도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라이프업 스페이스 옵션 (유상)

(단위	워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일	비고	
비스 포크	119A	1안	침실1	2안	비스포크 스튜디오 : 간살 파티션 + 천장마감 특화 + 조명기구 특화 + 장식장	119A	3,580,000	358,000	3,222,000	
고 스튜 디오	119B	1안	알파룸	2안	비스포크 스튜디오 : AL 슬라이딩 도어 + 천장마감 특화 + 시트판넬 + 조명기구 특화 + 장식장	119B	4,410,000	441,000	3,969,000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 및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간살 파티션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의 디자인 목적에 한해 설치되고 이동이 불가합니다.
- 간살 파티션 및 AL 슬라이딩 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 특화 마감재는 본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되는 조명기구의 경우 스마트스위치와 상관 없이 디밍/색온도 기능은 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비스포크 스튜디오의 천장에 시공되는 디자인보드는 재료 물성에 의해 이음매 발생될 수 있으며 재료분리대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비스포크 스튜디오의 천장에 시공되는 디자인보드의 제조사, 규격, 사양 및 시공패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9A 비스포크 스튜디오 공간은 별도의 난방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1 난방조절시 연동하여 작동됩니다
-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 선택시 장식장이 포함되며,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5) 라이프업 바스 옵션 (유상)

(단위: 원, \	VAT포함
-----------	-------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일	비고
			1. 벽 : 타일(300*600)				3,160,000	316,000	2,844,000	
	59,	1 O F	2. 바닥 : 타일(300*300)	201	1. 벽 : 대형타일(600*1,200) 2. 바닥 : 타일(300*600)	59B	3,160,000	316,000	2,844,000	
	84	1안	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2인	2안 3. 외산도기 (세면대, 비데일체형 양변기)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84A	3,160,000	316,000	2,844,000	
욕실 특화			5. 전자비데 (욕실2)		4. 4± 10 12 10	84B	3,160,000	316,000	2,844,000	
	110	4.01	1. 벽 : 타일(300*600) 2. 바닥 : 타일(300*300)	201	1. 벽 : 대형타일(600*1,200) 2. 바닥 : 타일(300*600)	119A	3,100,000	310,000	2,790,000	
	119	1안	3. 국산 세면대 / 투피스양변기 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5. 전자비데 (욕실2)	2안	3. 외산도기 (세면대, 비데일체형 양변기)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5. 욕실2 욕실상부장 연장	119B	3,100,000	310,000	2,790,000	

-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외산·국산 타일 규격이 상이하며,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면대는 하부 ABS페데스탈인 제품이 설치되며, 옵션형(2안) 선택 시 도기 일체형 세면대가 설치됩니다.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기본형(무상)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일	비고
욕실복합 환풍기	59,84	1안	미설치	2안	욕실1,2 복합환풍기 힘펠 FHD3-C150P (2대)	1,200,000	120,000	1,080,000					
욕실복합 환풍기	119	1안	미설치	2안	욕실2 복합환풍기 힘펠 FHD3-C150P (1대)	650,000	65,000	585,000					

- 욕실복합환풍기 기본형(1안) 선택 시 일반 욕실배기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옵션형(2안)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세대당 1개소 선택 가능하며, 설치 가능한 욕실은 상기와 같습니다.
- 상기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가전 (유상)

###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타입	옵션형	실내기 대수	제조사	설치장소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일	비고
	-01	0.511		7111 +1114	2 2 2 2 2 2 2			
59	2안	2대		거실, 침실1	2,800,000	280,000	2,520,000	
	3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400,000	540,000	4,860,000	
	2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4,400,000	440,000	3,960,000	
84A	3-1안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8,200,000	820,000	7,380,000	
	3-2안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6,900,000	690,000	6,210,000	주방특화 선택 시
84B	2안	3대	삼성전자	거실, 주방, 침실1	4,400,000	440,000	3,960,000	
040	3안	5대	0 0 C/I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6,900,000	690,000	6,210,000	
	2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4,600,000	460,000	4,140,000	
119A	3-1안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8,600,000	860,000	7,740,000	
	3-2안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7,400,000	740,000	6,660,000	주방특화 선택 시
119B	2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4,600,000	460,000	4,140,000	
1190	3안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8,600,000	860,000	7,74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단종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에는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설치제품(판넬 등)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제어용 무선리모컨이 제공되며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on/off제어가 가능합니다.

#### 2. 시스템청정환기

스시스밤 8	강경관기							(인위 . 편, VAI포임)
 타입	옵션형	장비 대수	제조사	설치장소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 (90%)	비고
니답	급신성	이미 네ㅜ	세소자	글시영호 	<u></u>	계약시	입주지정일	미끄
59A/B	2안	2대		거실, 침실1	1,980,000	198,000	1,782,000	
84A/B	3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3,940,000	394,000	3,546,000	
	2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2,960,000	296,000	2,664,000	
119A	3-1안	6대	삼성전자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5,900,000	590,000	5,310,000	
	3-2안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920,000	492,000	4,428,000	라이프업 수납 선택 시
	2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2,960,000	296,000	2,664,000	
119B	3-1안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5,900,000	590,000	5,310,000	
	3-2안	5대	1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920.000	492.000	4.428.000	라이프업 스페이스 특화 선택 시

/다의 · 의 \/AT표하\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 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져의 설치 개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감지기, 조명기구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시, 이중천장내 시스템청정환기 관련 전기시설이 설치됩니다.

### ③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계약시 납부)	잔금(입주지정일 납부)
	계약금	국민은행	816937-04-018677	주택도시보증공사		
추가선택품목	/11 i a	수 전문경 	610937-04-010077	동부PF금융지사	추가 선택품목 합계액의	추가 선택품목 합계액의
공사비 납부계좌	잔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계약체결시 세대별로 개별	주택도시보증공사	10%	90%
	건요 남구계의 	수민근행 	계좌부여(가상계좌)	동부FF금융지사		

-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분양사무소(대표번호 1533-03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지정된 납부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합니다. 또한 잔금 선납시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 지정된 옵션품목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추가 유상옵션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옵션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또는 발코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 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 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1)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1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입니다.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침실, 거실, 주방, 식당, 복도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타일, 강화석재> 현관, <타일>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 실외기실 바닥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 H	벽지, 벽 도장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 실외기실), 주방 벽타일,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2) 벽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아트월타일	배관배선
3) 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 실외기실), 몰딩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4) 일반가구	신발장, 기타수납장	-
5) 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 To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골미에면, 연기.중인 메린/메인, 구경 메기국트 
	천장, 타일(바닥, 벽), 샤워부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수	
6) 욕실	전 등), 욕실 악세서리, 욕실장, 바닥 배수구 커버, 욕실 환풍기 등 시스템욕실 일체,	건식벽체(석고보드 마감),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욕실 스피커폰	
ᄁᄽᅕ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
7) 창호	문선)	어, 하향식피난구실 도어, 실외기실 도어
8)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9)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1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총 분양가격에 마이너스 옵션금 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59A	59B	84A	84B	119A	119B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금액)	27,758,000	27,831,000	36,515,000	36,716,000	53,055,000	52,565,000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스템 욕실은 일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벽체는 건식벽체(석고보드 마감)로 시공됩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는 확장형 선택시 제공하는 품목 중 바닥난방이나 발코니 창호등 일부 품목만 개별 선택하여 설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람.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 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 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확약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 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 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음.
- 당 현장은 시스템욕실 적용 현장으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스템욕실 및 구성품 일체가 설치되지 않음.

# 10 단지 여건 등

구분	내용
일반 유의사항	<ul> <li>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비서류 등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 교란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li> <li>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li> <li>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새시,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li> </ul>

야 합 • 입주 • 입주 • 지정 • 안전-• 사용 체결 • 본 계

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혐오시설 유무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및 건본주택에 표현된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된 참고용 자료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색채디자인 등은 외부 조명 및 적용면의 크기에 따라 달라보이는 착시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세대 평면도는 주동 동호별 라인에 따라 외부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어 이는 배제하여 표현되어 있으며,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시공시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및 옥탑 디자인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네이밍 및 외부에 적용된 BI 사인의 위치, 개소, 내용, 구성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 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 301,302,303,304,309,310,311,312동은 ㈜대우건설, 305,306,307,308,313,314,315,316동은 중흥토건㈜에서 시공하며 하자 및 A/S는 각 담당 시공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는 시공사의 소유로서, 브랜드를 포함한 아파트의 명칭을 시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및 외부시설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 경 관조명 등의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인허가과정,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아파트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각종 인 쇄물상의 구획선, 아파트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고려한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변경) 승인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 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 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분양 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 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등),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아파트 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부지 및 시공 현황과 측량 결과, 각종 평가(심의) 및 인허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인허가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 사항으로 해당 주관사 또는 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 현	*** 보 아파트가 위치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조성중인 사업지로 기반시설(용수,전력,페수) 준공 지연으로 입주 지연이 발생 될 수 있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 대 지권(토지) 등기가 가능하므로 조성사업 완료 시기에 따라 건물등기 및 대지권등기가 별도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준공은 2027년 예정이나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과에 따라 본 아파트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 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가 위치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각종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내용(변경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부 여건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외부에 있는 공원, 녹지(완충녹지 포함), 공공공지, 도로, 교통안전시설, 소음저감시설 등 기반시설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계획, 세부시설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면적, 폭, 길이, 경사, 레벨, 개소 등이 분양홍보물모형, CG,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사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가 위치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 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용, 진동(주변 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연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 주변 현오시설 유무, 도로 소용, 조망, 일조, 진임로, 약취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라트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용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용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로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용,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선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의 현장 연간이 소송 주면 기반시설과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후 소용 및 대학보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의 전한 연간이 보안되지 않은 주면 기반시설과 환경을 통하여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선장의 최초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주면 기반시설과 유해시설의 위치는 현약 및 계약시 현장학인을 통하여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육	<ul> <li>본 아파트는 지구 내 설립 예정인 가칭)도일1초 통학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입주 전년도에 확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본 공동주택 입주예정인 중학생은 전산 추첨을 통해 송탄중학군 내 중학교(송탄중, 이충중, 장당중, 라온중, 은혜중, 태광중, 효명중)에 배치될 예정이나, 중학군(구)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 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일정 및 방법은 경기도평택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본 공동주택 입주 예정인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교)와 설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2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본 단지 내 입주 예정인 중·고등학생이 원활히 통학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가 해당 관청(평택시청)과의 협의를 통해 버스노선 신설 등 통학여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li> <li>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설립 계획된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야 설립 추진이 가능하고 공동주택 인근의 모든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 용지가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학교설립계획 보류(취소), 개발(실시)계획 변경,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 바랍니다.</li> </ul>
국공립 어린이집	<ul> <li>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1,990세대로,「주택법」제35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평택시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li> <li>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평택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li> <li>다만, 「영유아보육법」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평택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자지체의 지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li> <li>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평택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li> <li>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 까지 우선적으로</li> </ul>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이후 잔여 인워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워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평택시(경기도 평택시에서 선정하는 위 탁유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거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1,990세대로 본 아파트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 도 평택시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설치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합 지자체인 경기도 평택시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평택시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 자등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평택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다함께 제 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 돌봄센터 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평택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평택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평택시(경기도 평택시 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주 후 주차를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발생되는 다툼 등의 문제사항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유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등의 공용부분은 동 별 평면 설계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계획 •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인접한 302.303.307.308.310.316동 세대의 경우 차량 진출입시 통행 소음 및 경고등 등에 의한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유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점자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의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아파트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 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경계의 단차구간에 설치 예정인 조경석 등의 높이, 설치구간 공법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바닥포장, 지상 및 지하의 주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소방차정차구간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소방차량 활동공간 및 통로, 공기안전매트 등)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조경계획과 차량차단기, 문주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외부도로 및 공원, 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사이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의 분양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볼라드 및 보행자 휀스는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의사항이므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아파트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놀이터, 수공간, 체육시설, 휴게시설, 자전거보관소, 퍼스널 모빌리티/카트/휠체어 보관소 등)
- 아파트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탑라이트, D/A)이 설치되며, 아파트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재활용보관시설, 재활용 창고, 수목 등의 위치에 따라 저 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주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훼룸 D/A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1동 전면과 304동 동출입구 측면에 제연휀룸 D/A이 설치되며,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305동,308동,309동,310동,316동 측면에는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설치되며, 저층부에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303,310,311동 인근에는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설치되며, 저층부에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전체 주동의 저층부 석재마감은 2~6개층으로 적용이 되어있으며, 추후 주동 입면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저층부 석재마감 높이, 구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수증기 발생,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기실은 별도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 작동시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 및 보행시 소음, 열기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사업주체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및 규모는 착공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필로티 내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의 진출, 진입 차선 계획(차로 수, 차선 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부출입구의 주차 관제 시스템 및 경비실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상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인근에는 근생시설용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인근 주동(303,306,307,310동)에는 이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출입구(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선형 및 레벨은 현황에 맞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아파트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 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된 비상차량동선 경사로와 외부계단 등은 실 시공시 구조 검토 내용에 따라 기둥 및 벽체 등이 추가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중앙광장의 수목,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중앙광장 내 경사도 및 레벨은 주변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계획은 동별 평형 구성 및 층수에 따라 코아계획이 상이하여, ELEV.홀 창호의 크기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쓰레기보관소 설치 위치는 인허가 진행 시 결정된 사항으로, 각 세대별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에서는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302,316동 전면에 키즈스테이션 계획으로 소음, 진동, 조망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3,304,309동 사이에 유아놀이터 계획으로 소음, 진동, 조망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4,305,309동 사이, 305,306,307동 사이, 301,312동 사이, 313,314,315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 계획으로 소음, 진동, 조망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4,305,309동 사이, 312,313동 사이에 주민유동시설 계획으로 소음, 진동, 조망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광장 및 맞이마당의 수경시설 계획으로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 배수층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 에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함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 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고층 세대는 옥상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 차에 따른 보행편의성을 위해 계획된 셔틀용 승강기 인접세대에서는 승강기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승강기 기계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이 설치될 경우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 주동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소음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CG에 표현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유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혐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나,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 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품질 및 유지관리 성능을 고려하여 주동 전이층 부분의 구조 설계의 경우 개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및 디자인,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이버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사업주체의 다른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동 옥상구조물은 실시공 시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구조물 상부 및 내부면에는 도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주동 저층부는 도료, 석재, 기타 외장재 등으로 적용되며, 주동 형태, 인허가 조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동별 자재 적용 비율 및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 줄눈 및 돌출부의 형태와 크기는 현장 시 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면, 색채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 구조물은 향후 인허가 기관의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 장식탑은 시공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가 조정되고, 기둥 및 벽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에 설치 되는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 부대복리시설 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썬큰 공용부의 계단 및 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D/A(설비환기구)는 실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천장 내 기계설비 배관 및 덕트 소방 및 전기 트레이 등으로 유효 천장고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 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36개월)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따라 발생하는 시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동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른 단지와 비교 등을 이유로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 배치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외부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유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급수, 급탕, 난방, 가스요금 등은 입주민의 공동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CCTV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 구성에 따라 장비의 사양이 건축허가 시 제출되었던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우 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고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아파트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우수조, 훼룸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상층은 승강기 기계실,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 아파트 공용부에 통신사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상층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저층 일부 세대 소음. 진동 및 조망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 일부에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자 공동시설, 저수조, 빗물처리시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모형과 카다로그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엘리베이터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동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최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본 건물의 복도 천장고는 시공시 일부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주출입구, 부출입구의 차단기 위치는 인허가 혐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주동 계단실 자동개폐되는 창호는 3개층마다 설치예정이며, 동별 층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에 있는 창호는 전층 자동폐쇄장치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 장비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위치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위치는 공용홀로부터의 접근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주차장	해당 설비의 이동은 불가합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에 맞게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기기의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요금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동의 전후 측벽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바닥마감은 물 구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일부 주차구역은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 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수 없습니다.  • 주차장의 차로는 직각주차와 접해있는 차로의 경우 법규기준 6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로의 유효높이는 2.3m 이상, 주차구획의 유효높이는 2.1m 이상, 택배차량의 이동 동선에 해당하
	는 차로는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PC+RC 복합공법을 적용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공법 및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li>본 아파트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 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허용오차 내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li> <li>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은 차후 근린생활시설 분양 전, 일부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별도 동의 없이 개선 진행될 수 있습니다.</li> <li>각 점포 내 천장 속에는 공동사용을 위한 설비/전기/통신 등의 시설물이 관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훼손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설치는 지양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근린생활시설 	<ul> <li>경관조명이 설치되거나 또는 기타 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일부 점포의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본 시공 시 점포 내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설치로 인하여 벽체 종류 및 해당 부위의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냉,난방설비 비상발전기, 승강기설비, 실외기 등 시설에 대하여 작동 소음, 진동 및 미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일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li> <li>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않음을 인지 바랍니다.</li> <li>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오수 및 쓰레기 집하장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I	

# ■ 단위세대

구분	내용
평면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모든 마감자재는 시공 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 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실시공 시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부 일부 비내력벽(침실,욕실,PD, 발코니 등의 부분)은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 변경 될 수 있으며,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 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과다한 습도 유지와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 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 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사용시 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단위세대 기본 천장고는 2.3m(거실, 침실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은 상이합니다. 또한,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 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부분의 우물천장은 기본 제공 · 설치 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사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 등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재의 종류 및 성능은 법적기준 내에서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장롱, 붙박이장류)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마감·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기타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 높이 차이, 전기 용량 차이, 크기 등으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 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또는 공용부의 비내력 벽체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실별로 조적 또는 경량벽체, 골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욕실 / 현관 등 단차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B 단위세대 돌출발코니는 확장하여 실내공간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와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외부 루버의 색상은 주동 색채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에 따라 색상이 구분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및 브랜드, 창틀, 색상, 크기,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간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 및 환기덕트는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 및 옥외공간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며,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우수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발코니2(다용도실)의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구의 위치, 크기,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2(다용도실)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수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내기에서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이 적용되어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헤드 및 욕실배기 등 배관 설치를 위하여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발코니2)의 출입문의 형태, 재질,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발코니2)은 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습기가 높아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사용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시켜야 합니다.
- 세대 내부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 환기장치(전열교환기)의 설치로 다소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일부세대 제외) 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피난사다리 케이스는 철재재질로 별도 마감이 없으며, 발코니 높은턱 바닥 레벨에서 일부 돌출되어 설치됩니다. 피난사다리는 홀수층 짝수층의 위치가 다르게 설치되며 위층 세대의 피난사다 리가 아래층 천장에 노출되는 구조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가 설치되는 장소에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 및 시공측은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건축법 시행령」제46조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3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개폐시 경보음이 울리며, 각 세대내로의 임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 다용도실 외벽면으로 단열재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단열재가 설치되는 벽면 및 천장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구간에는 마감 설치 방식에 따라 접합부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외부 난간의 재료, 형태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이 계획된 발코니는 기본형에서도 급수, 배수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크기는 개방감 및 시공성 확보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타입(59B TYPE)의 침실(침실3)에 외부로 돌출되는 형태의 발코니가 시공되고, 입주 후 해당 위치에 창호, 구조 등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행위를 시행한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의 공간을 구분 하는 벽체는 향후 인허가 협의진행에 따라 설치, 변경,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 공사시 PVC계통(ABS)도어로 시공되며, 침실 문짝 모서리 상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각 실별 코킹 시공부 부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실

- 본 공사 시 119A/B타입 욕실1 세면대 하부장은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바스-욕실 특화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외산-국산 타일 규격이 상이하며,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기준은 주택형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겨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 가구(각종 일반가구,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바닥, 배면 등)은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위치 및 크기, 개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주방가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팝업 콘센트의 설치 유무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어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으며, 선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주방가구에 설치된 조리기구 행거, 선반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장식장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시 가구변형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서 전열 가전제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강마루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조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비누턱, 주방상판, 재료분리대 등)은 무늬와 색상, 줄눈나누기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되며, 제품 특성 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 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은 본공사 시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 가림판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수납장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개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의 규격은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라며,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가 (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가구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r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거실/주방바닥 타일 유상옵션 선택 시 줄눈사이는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오염,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루 선택시와 다르게 아래층 층간소음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유리슬라이딩도어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창고, 팬트리 등에 설치되는 폴딩도어는 기능성 도어가 아니므로 차음, 차폐, 차광 기능이 없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구 및 마감재

- 본 공사시 포켓도어의 프레임, 손잡이, 하드웨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 및 줄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 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 됩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분전반은 침실 또는 현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벽체에 노출되며, 단위세대 내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 등의 전기마감재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역난방 공급 대상지역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난방설비를 공급하여 공동주택은 별도의 개별보일러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난방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텐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악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과 침실1(벽걸이형)에 매립 설치되며, 기타 침실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기기계설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세대 안방 화장대 가구조명(조명/콘센트 일체형)은 현관 인근 스마트일괄제어스위치(스마트생활정보기)로 소등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하향식 피난구 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나,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배수배관이 층하배관 시스템 이므로 인접세대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상부에 상부세대의 설비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세탁기 설치 예정위치에 저층배관 통기를 위한 발코니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과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실외기, 우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배기구가 설치되며 배기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설비가 실외기실 천장 상부에 노출로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실외기실(또는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피난사다리의 사양은 마감 및 시공성 고려하여 설치됩니다.
-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다용도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본 시공 시 설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이해를 돕기위한 견본주택의 가시설물로, 실시공시 설계도면 및 관계 법규에 의해 시공될 예정입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삼상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주방TV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경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유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구	분	설치 위치			
옥외안테나	옥상층	305동, 307동, 308동, 309동, 310동, 312동, 315동			
	옥상층	305동, 307동, 308동, 309동, 310동, 312동, 315동			
중계장치	지하1층	지하주차장 휀룸(4개소)			
	지하2층	시역구시 6 첸품(4세포)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301동~31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을 훼손하고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이동통신용 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Wall-Pad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2층 및 최상층에 적용됩니다.(일부 구조에 따라 설치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쿡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화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 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사업주체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 (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댁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 책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주거서비스) 당사와의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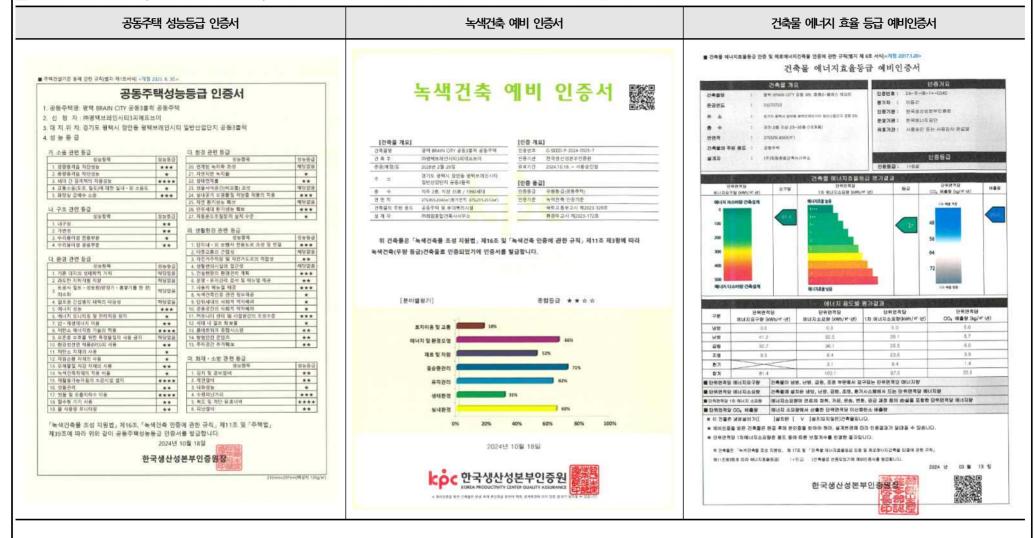
구분	내용
· 한 그 전본 본목에 본드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내용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 가구가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현관 도어폰, 세대 분전반, 통신 단자함, 주방TV 등의 제품 사 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위생도기와 수전, 악세서리류, 냉매배관박스, 바닥배수구, 각종 조절기와 조작버튼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나 높이, 색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발코니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단열조치를 준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 - " - " - " - " - " - " - " - " - "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기계보다 서계기조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해당 없음	지역난방 열원사용으로 가정용보일러 미사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조명설비를 설치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미적용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 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 ■ 내진 성능 및 능력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0.204g	VII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 7.0m	2.3m (지하1층 택배차량 이동동선 2.7m)	2.7m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분양가 주요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 총 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보호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구	· 분	적 <del>용총</del> 액		구	규	적 <del>용총</del> 액		구	분	적 <del>용총</del> 액			
		택지매입원가	328,566,292,842	42					철근콘크리트공사	160,880,198,000			위생기구공사	5,807,508,000
		기간이자	39,578,457,845			용접공사	-		기계	난방설비공사	3,961,071,000			
택지	비	필요적 경비	17,153,194,554			조적공사	2,796,736,000			가스설비공사	4,667,668,000			
		그밖의 비용	28,524,762,327			미장공사	10,091,318,000		설비	자동제어설비공사	758,173,000			
		계	413,822,707,568			단열공사	7,928,893,000			특수설비공사	8,659,685,000			
		토공사	14,425,985,000			방수, 방습공사	6,602,605,000			공조설비공사	-			
		흙막이공사	-			목공사	9,716,498,000	공사비		전기설비공사	32,728,175,000			
		비탈면보호공사	229,917,000			가구공사	17,558,894,000	0.1-1	그밖의	정보통신공사	17,823,054,000			
	토목	옹벽공사	-	공사비		금속공사	7,323,414,000		공종	소방설비공사	29,258,199,000			
		석축공사	-		건축	지붕 및 홈통공사	2,306,587,000		,	승강기공사	9,257,972,000			
		우, 오수공사	384,977,000			창호공사	15,742,457,000		그밖의	일반관리비	19,952,357,000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4,094,192,000		공사비	이 윤	12,302,639,000			
7.1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620,115,000			타일공사	5,766,467,000			계	496,515,849,000			
공사비		도로포장공사	3,229,537,000			돌공사	7,755,899,000			설계비	13,643,311,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481,222,000			도장공사	2,710,239,000		감리비		15,378,299,000			
		정화조시설공사	235,264,000			도배공사	2,710,239,000		일반분양시설경비		28,539,676,599			
		조경공사	20,318,281,000			수장공사	8,678,534,000	간접비	분단	담금 및 부담금	28,100,604,432			
		부대시설공사	3,630,556,000			주방용구공사	1,326,287,000			보상비	-			
		공통가설공사	4,296,018,000			잡공사	2,883,233,000		기타	사업비성 경비	91,232,040,461			
	건축	가시설물공사	1,441,616,000		기계	급수설비공사	5,853,926,000			계	176,893,931,492			
	[	지정 및 기초공사	5,708,803,000		기계   설비	급탕설비공사	4,631,565,000		그밖의	의 비용	66,980,511,940			
		철골공사	-		2 9	오배수설비공사	7,978,876,000		합	계	1,154,213,000,000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항 목	심사결과금액	
	법정	39,578,457,845	
	제시	네공과금	17,153,194,554
택지비가산비	암석지	반 공사비	18,405,690,073
택시비가진비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6,688,636,217
	택지와	관련된 경비	3,430,436,037
	소 계(택제	지비 가산항목)	85,256,414,726
	법정초과 특	록리시설 건축비	1,916,459,480
		홈네트워크	18,266,624,400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에어컨냉매배관	6,367,712,700
		기계환기설비	9,461,488,500
ᄁᄎᄞᄭᄊᄞ	공동주	택성능등급	15,762,150,611
건축비가산비 —	에너지절의	<sup>‡형 친환경주택</sup>	8,593,256,060
	지하주차장 :	층고 증가 공사비	1,946,122,200
	법령 개정에 따른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기	1,044,951,600
	분양트	보증수수료 -	3,621,746,389
	소 계(건·	축비 가산항목)	66,980,511,940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부흥이앤씨	㈜동도이엔씨	㈜엔탑엔지니어링
감리금액	7,327,001,000	1,390,764,326	1,801,790,000	285,000,000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4-101-0004100 호	807,949,1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  03012024-101-0004100 \(\frac{1}{2}\)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 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 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 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 분양대금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	주체	시공회사		
	굔	공동사업주체 대표자	등록업자	<b>~</b> 15	<b>시</b>	
상	호	㈜평택브레인시티3피에프브이	중흥토건㈜	중흥토건㈜ ㈜대우건설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284,				
주	소	상가동 4층(백운동, 백운대라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어썸브릿지 주상복합)				
법인등록번호		200111-0681910	205511-0004135	205511-0004135	110111-2137895	
대 표 번 호		02-3454-1263	062-510-2114	062-510-2114	02-2288-3114	

<sup>※</sup> 본 아파트 301,302,303,304,309,310,311,312동은 ㈜대우건설, 305,306,307,308,313,314,315,316동은 중흥토건㈜에서 시공하며 하자 및 A/S는 각 담당 시공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 견본주택 안내

####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4-3번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대표번호를 통하여 견본주택 운영 관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prugio.com/hc/2024/braincity 견본주택 분양 문의 1533-0364 레다리초-중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 펌텍세우서 기타 사항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배다리생태공형